

①양식창업및시설지원(양식기술기반구축&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강미숙 사무관 장석준 주무관 라은교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I.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양식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 시설을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으로 전환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5조(양식창업 지원), 제66조(보조 등)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 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만톤)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20	2021	2022	2023		
국내양식 생산량	230	230	233	227	-	'25.1	양식 생산량 잠정치 (KMI 관측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1,027	21,027	21,027	21,027
- 국 비	7,157	7,157	7,157	7,157
- 지방비	7,157	7,157	7,157	7,157
- 자부담	6,713	6,713	6,713	6,713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은 예산 확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기술 기반구축)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구)
-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공통사항)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된 자(세부사항은 공모계획에 따름)
 -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자
- (양식기술 기반구축)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자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
 -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함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일반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4호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집행지연 시

- (지방비 미확보) 선정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해당 민간사업자를 추천한 시·군·구 포함)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포기) 선정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사업포기 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민간사업자 포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범위)에 대해서는 “양식기술 기반구축” 사업 지원 시 포기발생 건수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며, 패널티 상세 내용은 공고문에 따름
- (집행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계속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①친환경 또는 ②스마트시스템 양식방식으로 ③고부가가치 또는 ④신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양식하는 시설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⑤기반시설 및 ⑥개발된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공모로 선정

< 친환경양식어업의 요건 >

- ① **(친환경 양식)** 양식(수산종자 포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산물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한 수산물을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산 방식에 의한 시설이어야 함
 예)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플락양식, 필터로 바이러스 및 사육수 등을 제어하는 순환여과식양식, 전기분해 등으로 바닷물을 살균·소독하는 용수정화시스템 등
- ② **(스마트양식시스템)** 민간양식장 용수처리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 또는 산업화 기술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이어야 함
- ③ **(고부가가치 품종)** 공모사업 평가 시 심사위원이 산업적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품종으로 인정하는 품종이어야 함
- ④ **(신 양식품종)** 기술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종으로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종이어야 함
- ⑤ **(기반시설)** 민간분야의 친환경양식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보급 등 양식시설 및 양식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 이어야 함
- ⑥ **(기술개발·보급)** 양식어업에 관한 친환경 등 국외 새로운 기술·자재도입, 개발된 기술·자재를 산업화하거나 그 밖에 양식어업에 관한 기술·자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자생산시설 등을 건립(증·개축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 *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지급 가능
-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자구입으로는 사용 금지
-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및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조 건
양식기술기반구축(지자체 직접)	국비 50%, 지방비 50%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지자체 민간보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구 분		지원내용 예시	총 사업비
양식 기술 기반 구축	우량종자 생산·양식· 육종연구 시설	· 질병, 수온 등에 강한 우량(육종)종자 연구결과가 있는 양식품종 · 종자부족 또는 열성화에 따라 양식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양식품종 · 기타 예방양식 산업 육성에 애로가 있는 양식품종 · 상기 양식품종에 대한 스마트양식 기술 적용 등	최대 100억원 (국비 최대 50억)
첨단 친환 경양 식시 스템	바이오플라 양식시설	· 설계비, 바이오플라 기술 적용 시설 신축 사업비 · 토목, 압축성형필름(HDPE·LDPE 등), 수차 등 시설을 위한 증·개축 사업비	최대 40억원 (국비 최대 12억)
	순환여과식 육양양식시설	· 설계비, 순환여과 기술 적용 양식시설 신축 사업비 · 여과시설(필터, 사여과기 등)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사용 저감 시설(장비 포함)을 위한 증·개축 사업비	최대 100억원 (국비 최대 30억)
	용수정화 육양양식시설	· 오존, 자외선, 전기분해 등 용수 정화시설 적용을 위한 시설 사업비 (대일 넘치 수출 양식시설 우선 지원)	최대 40억원 (국비 최대 12억)
	기존 양식 시설 보완	· 현재 운영중인 양식시설에 수질환경 모니터링·제어시스템 또는 압축성형필름(HDPE·LDPE 등) 등 바닥 오염원 차단을 위한 시설 보완 사업비	최대 40억원 (국비 최대 12억)
	스마트 예방양식 시설구축	· 수질모니터링(DO, 수온 등)+환경제어시스템+CCTV+제어SW시설을 포함한 양식시설 신축 사업비, 기존 양식시설에 스마트 시설 보완 또는 증·개축하기 위한 사업비	최대 60억원 (국비 최대 18억)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 시설지원 (시범사업)	· 기존 양식시설에 환경모니터링 및 제어, 자동먹이공급, 재해대응 시스템 등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인정하는 시설 및 부속시설 사업비	개소당 3억원 이내 총 10개소 이내 (국비 0.9억×10 이내)
	아쿠아포닉스 양식시설 (시범사업)	· 양식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양식시설 및 수질정화 시설 등 아쿠아포닉스 기술 적용 시설 신축 또는 기존 시설의 아쿠아포닉스 전환(보완) 사업비(스마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함) · 재배시설 부분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최대 50억원 (국비 최대 15억)
	친환경 양식시설	· 상기 지정한 사업 외 환경오염 및 수산동물용의약품 사용 저감, 질병·폐사문제 완화, 생산성 제고 등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목적에 부합하는 양식시설 사업비	최대 50억원 (국비 최대 15억)

- 지원기간: 단년도 또는 최대 3년(선정 사업계획에 따름)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사후관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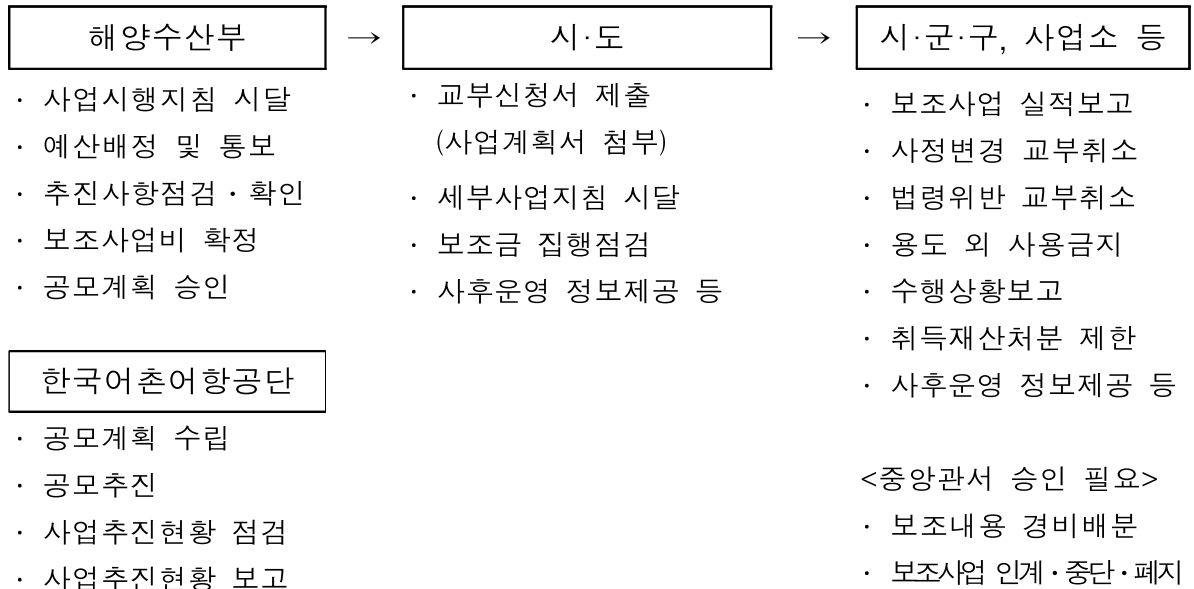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처분제한기간	공시기간	
- 부동산과 그 종물	취득일로부터 10년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취득일로부터 10년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취득일로부터 5년	취득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그 밖의 기계,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과 그 종물’에 해당하는 처분제한기간을 적용함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 (양식기술기반구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시장·군수·구청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양식기술기반구축(지자체사업)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시설사업)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모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매년 12월 중)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출한 공모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통보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예비사업자 선정사업에 한함)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내역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선정사업)
- 시설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 시달(매년 12월말)

3. 사업신청 단계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승인받은 공모계획을 활용하여 공모 추진
- 공고문 게시 및 사업신청 접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고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품종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체 사업계획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모집 공고문에 따라 사업 신청
- 신규사업은 시·도 심의회 심의를 통해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모집 공고문에 따라 신청
-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 수요조사 또는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신청

※ 상세 유의사항은 공고문에 따르며, 민간사업 희망자의 사전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첨단양식산업팀 ☎02-6098-0764) 사전컨설팅 연계 협조

4. 사업자선정 단계

한국어촌어항공단

-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다음연도 예산에 대하여 사전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예비선정할 수 있음
- *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 심의결과 등에 따라 신규 사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로 보고

해양수산부

- 공모결과를 지방자치단체(시·도)로 통보 및 예산편성 통보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자에게 공모결과 통보

5.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지자체 직접사업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공모 선정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업계획과 선정된 사업자가 제출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야 함
-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사업 착수 전 위탁사업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라야함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

- 공모 선정 사업계획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경미한 사항 제외)을 받고 사업 추진하여야 하며, 변경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사업관련 계약 등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 시스템 (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점검협조 요청 가능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서식10)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 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승인 품종에 대한 양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해수부 요청 시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 애로사항 파악을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 수시점검
- 시·도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로 보고
- 해수부 요청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보고
- 사후 관리기간 동안 완료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등 조사하여야 하며, 해수부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 시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상황 등 점검 시 설문응답,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품종은 사후 관리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양식품종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재 》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서식9)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승인연도 이후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해당 기간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

《 사업비 정산 》

공통사항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7), 정산서(서식8),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요청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 *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 다음연도 사업 수요는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문에 따름
- (기타사항) 붙임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지방자치단체용)

신 청 자	구 분	☐ 시·도 연구기관 ☐ 시·군·구 연구기관 ☐ 기타()					
	기 관 명				지 자 체		
	기 관 장				고유번호		
	주 소				연 락 처	()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분류(참고1)					
		자체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번지까지 기재)						
	사업 희망품종						
	사 업 비 (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자부담 (%)
			국고계 (%)	보 조 (%)	융 자 (%)		
※ 총사업비 집행계획 : ('24년) 0,000, ('25년) 0,000, ('26년) 0,000백만원							
사업규모(량, m ²)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신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이력서 포함) 1부 2.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사본 1부 3. 지방비 투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4. (선택사항)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등 사업계획 증빙에 필요한 서류							

주1) 해당 ☐ 에 “√” 표시
주2) ‘사업분류’는 참고1의 ‘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민간사업자용)

신 청 자	구 분	☐ 개인 ☐ 단체(☐ 법인 ☐ 협동조합 ☐ 어촌계 ☐ 기타)					
	업체명 (단체명)				참여어가수 (단체일 경우)	개소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 고유번호)		
	주 소 (단체주소지)				연락처	()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분류(참고1)					
		자체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번지까지 기재)						
	사업관련 양식면허 또는 허가 (☐ 취득 예정)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자부담 (%)
			국고계 (%)	보 조 (%)	융 자 (%)		
	※ 총사업비 집행계획 : ('24년) 0,000, ('25년) 0,000, ('26년) 0,000백만원						
사업 희망품종							
사업규모(량, m ³)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민간사업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이력서 포함) 1부 2.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사본 1부 3. 양식면허·허가 증빙서류 사본 1부 4.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법인 등 단체의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1부 6. (선택사항)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등 사업계획 증빙에 필요한 서류							

주1) 해당 ☐ 에 “√” 표시

주2) ‘사업분류’는 참고1의 ‘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

보 조 사 업 반 납 서 약 서

저(성명, 업체명)는 20△△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친환경양식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신청기관명	기초, 광역지자체 별도 작성
	주 소	
	보조사업자	(서명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 ○ ○ (보조사업자)

1. ○ ○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 국고보조 비율 : ○○%

○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절차 및 양식 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반기에 1회)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내역사업:
2. 시·도(군·구)명:
3.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 상세사업명:
5. 사업연도:
6. 사업내용
 - 사 업 자: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사업규모:
 - 주요 사업내용
7. 추진현황
 - yyyy. mm. dd. :
8.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9. 향후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연간 기대 생산량: 미/패/톤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 ## 10. 사업 완료사진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금 정산서

1. 내역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2.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3. 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 사업자:

5. 사업연도:

6. 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확정신청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전 체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포기 검토의견서

☐ 사업개요

o 사업명:

o 사업자:

o 사업연도:

o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부담)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yyyy				
합계				

o 사업내용(당초 계획한 주요시설 등 사업내용 간략하게 작성):

☐ 추진현황(지자체 사업관리,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현황 등 작성)

o yyyy. mm. dd. :

☐ 포기사유

o

☐ 검토의견(사업포기 원인을 분석하여 지자체 검토의견 작성)

o

☐ 향후 추진계획(반납계획 포함)

o

붙임 사업포기서(사유포함) 0부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추진현황(4분기)

보조사업구분	☐ 양식기술기반구축(지자체)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					
사업명						
사업자명	00수산 홍길동(첨단친환경) 또는 00연구소 홍길동(양식기술기반구축)		선정연월	0000년 00월		
시·도 사업담당	00시·도 00과/연구소 홍길동 (☎ 000-000-0000)		시·군·구 사업담당	00시·군·구 00과/연구소 홍길동 (☎ 000-000-0000)		
사업장소	00시·도 00시·군·구 00읍·면·동 00외 0필지(도로명 주소로 기재 가능)					
사업구분	☐ 시설건립 ☐ 개·보수 ☐ 장비지원					
친환경 적용기술 *복수선택가능	☐ 용수정화(UV,오존,전기분해) ☐ 순환여과 ☐ BFT ☐ 기존시설 보완 ☐ 스마트 양식 ☐ 아쿠아포닉스 ☐ 기타 친환경 양식					
사업규모	부지면적 0,000㎡, 시설면적 0,000㎡(수조 00개, 건물 00동), 장비 00개					
주요 사업내용	양식품종					
	사업내용					
사업기간	'00.00월 ~ '00.00월(* 사업선정 시 제출된 사업기간으로 작성)					
사업비 편성내역 (*총사업비: 0,000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천원)	0	0	0	0	0
	20 년					
	20 년					
	...					
사업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계획연월	
	사전행정절차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00.00월~'00.00월	
	실시설계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00.00월~'00.00월	
	인·허가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00.00월~'00.00월	
	공사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00.00월~'00.00월	
	정산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으로 작성			'00.00월	
	...	* 기타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 작성(표 순서조정 가능)			'00.00월~'00.00월	
사업추진 실적	위탁 여부	☐ 미위탁 ☐ 위탁(위탁기관/계약월: 000기관/'00.00월)				
	추진 단계	☐ 계획 중 ☐ 설계·인허가 중 ☐ 공사 중 ☐ 공사 완료 ☐ 정산·반납 완료 ☐ 사업포기 ☐ 기타()				
	구 분	추진실적			추진연월	
	사전행정절차	- (완료) - (미완료 사유) -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 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00.00월~'00.00월	
	실시설계	- (완료) - (미완료 사유) -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 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00.00월~'00.00월	

	인·허가	- (완료) - (미완료 사유) -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00.00월~'00.00월
	공사	- (완료) - (미완료 사유) - (보완대책 또는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되 미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미완료 사유 및 보완대책 또는 계획 작성					'00.00월~'00.00월
	정산 및 반납	- (정산여부) - (반납여부) * 완료 또는 포기사업에 대한 정산·반납 실적 또는 계획 작성					(확정)'00.00.00 (반납)'00.00.00
	중요재산 등록	- (부기등기현황 또는 부기등기 불가 재산 관리현황) - (부기등기내용 또는 관리대장 부기내용) - (공시현황) - (미공시 사유 및 조치계획)					(포기)'00.00.00 (승인)'00.00.00
	사업포기	- (포기사유) - (조치실적·계획)					(취득)'00.00.00 (공시)'00.00.00
	...	* 기타(사업자변경 등) 실적작성(표 순서조정 가능)					'00.00월~'00.00월
집행현황 * 국비 기준	○ 국비 실집행 현황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천원)	2,000			1,300		700
	20 년	1000	500	1500	800	700	700
	20 년	1000	0	1000	500	500	0
	...						
자체점검 실적	* 예시 참조하여 집행에 따른 계산된 금액으로 작성						
	○ 분기별 집행실적 및 계획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누적)						
	실적(천원)						
	* 실적 : 각 분기 집행액, 계 : 사업비 총 집행액 작성						
현장사진	○ (점검결과)* 사업관리주체의 보조사업 추진현황 또는 집행점검 실적 작성						
	○ (조치사항)						
그 외 건의사항	사진						
	사진						
그 외 건의사항	사진설명('00.00.00.)						
	사진설명('00.00.00.)						
그 외 건의사항							
	* 사업 추진 애로사항 또는 개선 건의사항 등 작성						

②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테스트베드&배후단지기반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장 강미숙 사무관 장석준 주무관 라은교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I. 사업개요

1. 목 적

-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배후부지에는 대량생산, 가공·유통·수출 단지, R&D, 창업교육, 인력양성 등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 기반 마련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5조(양식창업 지원), 제66조(보조 등)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 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20	2021	2022	2023		
사업별 공정 단계	부산	준공	기본계획	기반착공	TB착공	준공	'25.1	사업 점검결과 (지자체 문서 등)
	경남고성	실시설계	기본계획	기반설계 TB설계	기반설계 TB설계	실시설계		
	전남신안	준공	선정	기본계획 기반설계	TB설계	실시설계		
	강원	준공	-	선정	실시설계	실시설계, TB착공		
	경북포항	준공	-	선정	기본계획	실시설계, TB착공		
	제주	실시설계	-	-	선정	기본계획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7,971	35,529	0	0
- 국 비	15,300	19,850	-	-
- 지방비	10,871	15,679	-	-
- 자부담	1,800	-	-	-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민간)
 - 해수부는 지자체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테스트베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계획 등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간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인정할 만한 사유로 구성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그 외 공모평가를 거치지 않고 지정형으로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세부사항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름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종자·사료·기자재 및 유통·가공·수출기업, 연구기업 등으로 구성된 법인 등(해당 사업예정자 포함)
 - * 법인 설립 근거 개별법령에 따라 수산양식,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스마트양식 기반조성 : 광역지자체장 또는 기초지자체장
- 공모평가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함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4호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다음 공모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와 후보 지자체(2순위)를 동시에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자체의 의사에 따라 포기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함

② 사업자 선정 취소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공모 당시 접수한 예비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목표달성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체의 의견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관리 T/F 등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 선정결과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후보 지자체(2순위)를 사업대상 지자체로 결정할 수 있음

③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관리 T/F 구성 및 운영

- 사업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추진 단계별 행정·기술적 지원·점검 및 현안사항 의사결정,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T/F 구성, 주요기능,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3. 지원대상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비(개소당 300억)
- 스마트양식 기반조성(배후부지 기반조성)(개소당 100억)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조성

-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양식 요소기술들을 조합하여 고소득 어종의 양식 기술 개발 및 생산성 제고, 기자재 실증 및 표준화를 위한 시범 양식장 조성
 - * 사업예산은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기반시설 공사, 스마트양식 시스템 도입 및 건축 공사비 등 시범양식장 건립비와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으로 집행
- 수익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①, 연구개발^②, 인력양성^③, 선도모델 확산장소^④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스마트양식 확산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①양식생물 및 사육환경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활용 ②연구기관 및 전후방기업의 기술적·상업적 타당성 검증 장소 ③수산업 학교 학생 및 어업인 교육 장소 ④구축된 모델 및 축적된 데이터를 창업자에게 혁신사례로 공개

나. 스마트양식 기반조성(배후부지 기반조성)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취·배수시설, 상하수도, 도로, 전기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조성사업을 추진
 - * 사업예산은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이행,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 등과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으로 집행

다. 사업비 집행 제한

- 사업비는 토지·부지·건물매입비·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비의 경우 양식시설 및 교육연구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자금 매칭기준

구 분	지 원 조 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조성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또는 국비50%, 지방비50%
스마트양식 기반조성	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 사업의 공공기관 등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개소당 300억원(국비 150억원)
- 스마트양식 기반조성: 개소당 100억원(국비 70억원)
- 지원기간: 개소당 4년(테스트베드 4년/기반조성 3년)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변동현황 공시 기간	처분제한기간	
- 부동산과 그 종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취득일로부터 35년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취득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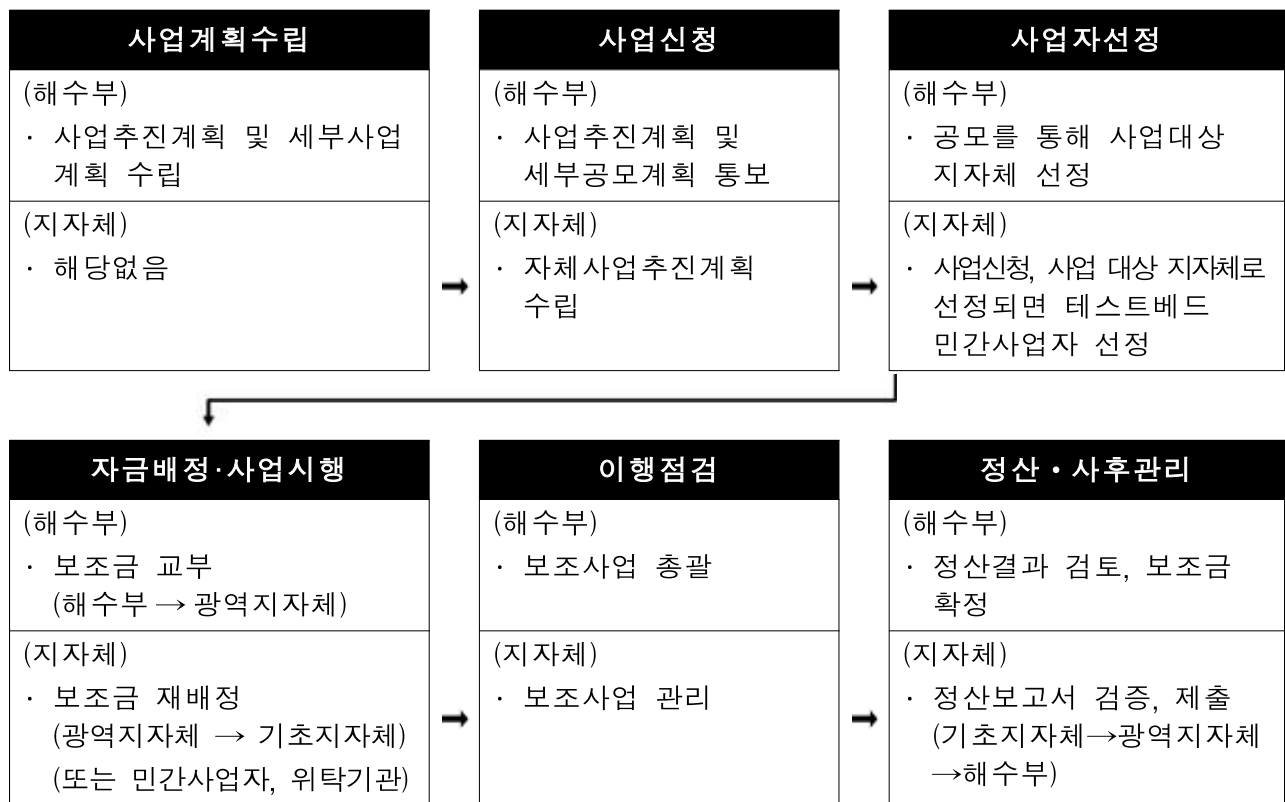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성 후 분양하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분양공고일로부터 10년간 처분제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최초 분양공고일과 차기 분양공고일이 18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양공고일로부터 10년간 처분제한기준을 적용함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그 밖의 기계,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7. 고가동산 중 ‘그 외 기계류 등’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함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의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전년도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행지침 개정(필요시) 통보

3.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 지자체 주관으로 특화 모델을 기획하고, 조성된 배후부지에는 민간투자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자체 계획 수립
 -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사전 기획연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자체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내 최적 대상부지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단 논의를 거쳐 예비계획서 등 공고된 제반 서류를 작성
 - * 테스트베드 사업만 신청하거나 배후부지 기반조성 사업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테스트베드 조성사업과 배후부지 기반조성 사업을 동시에 신청)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 *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포기 또는 선정결과 취소에 대비하여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와 후보 지자체(2순위)를 동시에 선정할 수 있음
- 공모평가에 따르지 않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자치단체에 대한 타당성 평가
 - * 타당성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 등은 별도 통보

시·도(시·군·구)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조성 사업은 시행지침 및 공고된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 선정(별도로 정하는 경우 예외) 후 시행
- 스마트양식 기반조성사업은 선정된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

5.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조성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 스마트양식 기반조성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공모 선정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업계획과 선정된 사업자가 제출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야 함
-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사업 착수 전 위탁사업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라야함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

- 공모 선정 사업계획 또는 승인 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경미한 사항 제외)을 받고 사업 추진하여야 함

- 사업관련 계약 등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도(시·군·구)

- 사·도(시·군·구)는 테스트베드조성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감독공무원을 임명 하여 사업 관리

《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 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관리 T/F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현장 점검 실시

사·도(시·군·구)

-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서식5)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 애로사항 파악을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 수시점검

- 해수부 요청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보고
- 사후 관리기간 동안 완료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등 조사하여야 하며, 해수부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 시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상황 등 점검 시 설문응답,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재 》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공모 평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사업 시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비 정산 》

공통사항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서,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요청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계획, 행정지시(통보)에 따르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국토계획법, 건설법령, 환경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보 조 사 업 반 납 서 약 서

저(성명, 업체명)는 20△△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친환경양식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신청기관명	기초, 광역지자체 별도 작성
	주 소	
	보조사업자	(서명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 ○ ○ (보조사업자)

1. ○ ○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 국고보조 비율 : ○○%

○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절차 및 양식 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반기에 1회)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4호 서식】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4분기)

□ 기본 현황*(기존 자료 인용)*

항 목	내 용
부지위치	
부지면적	
사업비 현황	

□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핵심사항 위주 1페이지)*

○ 추진현황

-
- *
-
-
-

○ 향후계획

-
- *
-
-
-

□ '00년 국비 실집행 현황 및 계획 (분기말 재정시스템 기준)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해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		*실집행 세부 계획
				완료	계획*	
2019	-	-	-	-	-	○
2020						

○ 스마트양식 배후부지 기반조성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해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		*실집행 세부 계획
				완료	계획*	
2019	-	-	-	-	-	○
2020						

□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건의사항,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 등 포함)

○

-

*

○

-

*

참고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추진 일정표

※ 핵심사항 위주로 해당사업 특성에 맞게 표를 가감하여 작성

[illegible]

③ 공동생산시설지원(명계공동생산시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강미숙 사무관 장석준 주무관 라은교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I.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적인 명계(우렁챙이)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노후 작업대를 규격화, 위생관리, 내구성이 보강된 공동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 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20	2021	2022	2023		
명계공동생산시설 지원개소	55	30	30	25	25	'25.1	시설지원 결과 (경남도 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3,850	3,850	0	0
- 국 비	1,925	1,925		
- 지방비	1,155	1,155		
- 자부담	770	77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예산액, 사업규모,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어류등양식어업면허(우렁챙이)를 받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 등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사업자격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어류등양식어업면허(우렁챙이)를 받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 등으로 3어가 이상 구성(어장 합계면적 3ha 이상이어야 함)된 생산자단체로 어장면적의 합이 3ha이상이어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함(단,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는 불가함)
- 사업운영: 경상남도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 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4호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집행지연 시

- (지방비 미확보) 선정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해당 민간사업자를 추천한 시·군·구 포함)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포기) 선정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사업포기 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집행 지연) 선정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보조금 교부신청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사업자에 인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차순위 사업자 인계 조건 : 지자체(도, 시군)내 우선 순위에 보조사업자 명단이 있어야 하며 시·도, 시·군·구 자체평가나 해수부 평가 필수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위생적인 시설이 구비된 다목적 공동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작업대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내구성이 높고 위생적인 재질을 사용하여 하고, 부력재로 부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증부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 생산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장비(살균소독장비 등) 및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 사업대상은 3어가 이상 구성(어장 합계면적 3ha 이상이어야 함)된 어업인 공동체

- 공동생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 수가 많은 공동체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어업인 수가 동일한 경우 어장면적 큰 공동체를 우선으로 지원
- 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20-'23년, 명계공동생산시설)의 경우, 기 지원된 장비를 제외한 장비에 대해서만 추가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 재질의 작업대 및 생산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장비(살균소독 장비 등),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의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토지·부지,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자금 매칭기준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민간사업자의 동의 시)
- 사업주관(집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경상남도), 민간보조사업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국비기준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처분제한기간	공시기간	
- 부동산과 그 종물	취득일로부터 10년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취득일로부터 10년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취득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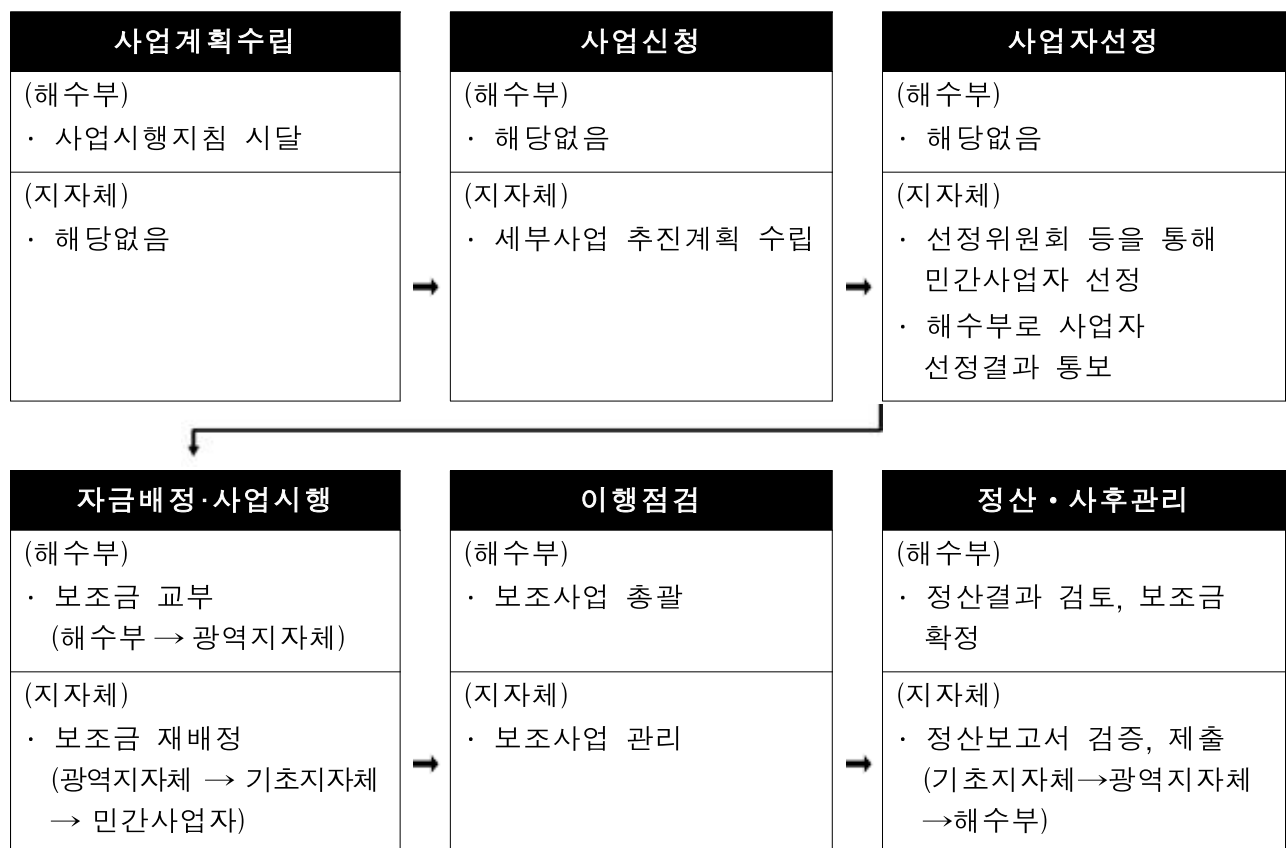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그 밖의 기계,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과 그 중물'에 해당하는 처분제한기간을 적용함
-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은 '23년 선정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의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내역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 시행지침 통보(매년 12월말)

3.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공동생산시설지원(명계공동생산시설) 사업 시행지침 II. 1.~ 3.」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 시·도는 시·군·구의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수요를 검토하여 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 시·도는 도 단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사업자를 모집토록 통보

4.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 「공동생산시설지원(명계공동생산시설) 사업 시행지침 II. 1.~3.」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 시·도는 시·군·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데로 시·군·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 시·도는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결과 및 선정 사업자 내역을 해양수산부로 보고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을 바탕으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5.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라야함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 및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데로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자,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변경사업자가 공모평가 시

우선순위 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 민간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서식4)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 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
-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 제재 》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비 정산 》

공통사항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8), 정산서(서식9),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요청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 *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행정지시(통보)에 따르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국토

계획법, 건설법령, 환경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 1부.						

-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

[illegible]

보 조 사 업 반 납 서 약 서

저(성명, 업체명)는 20△△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친환경양식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보조사업자	(서명 /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 ○ ○ (보조사업자)

1. ○ ○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 국고보조 비율 : ○○%

○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절차 및 양식 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반기에 1회)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생산시설지원 추진상황보고(4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내역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행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내역사업:
2. 시·도(군·구)명:
3.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 상세사업명:
5. 사업연도:
6. 사업내용
 - 사 업 자: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사업규모:
 - 주요 사업내용
7. 추진현황
 - yyyy. mm. dd. :
8.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9. 향후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연간 기대 생산량: 미/패/톤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 ## 10. 사업 완료사진

【별지 제7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금 정산서

1.내역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2.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3.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사업자:

5.사업연도:

6.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확정신청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전 체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④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강미숙 사무관 장석준 주무관 라은교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I. 사업개요

1. 목 적

-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나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 확충
- 다수의 어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개체굴 양식을 하기 위한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을 갖춘 공동생산시설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 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20	2021	2022	2023		
친환경 개체굴 공동 생산시설 지원개소	2	-	4	3	3	'25.1	사업추진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000	4,000	4,000	-
- 국 비	2,000	2,000	2,000	-
- 지방비	1,200	1,200	1,200	-
- 자부담	800	800	800	-

* 지방비와 자부담은 예산액, 사업규모,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은 확정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관할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굴)를 받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다수로 구성된 어업인 공동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장으로 전환하려는 5개 이상의 어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요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가 가능한 시·군·구
- 공모 신청 전까지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단위 규격설정 가능)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필수사항】

- ①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그 외 사업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따름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집행지연 시

- (지방비 미확보) 선정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포기) 선정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어업인 공동체는 사업포기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집행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민간사업자 지원사업)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장으로 전환하려는 5개 이상의 어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체굴 양식을 위한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의 공동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자체 직접사업)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공동생산시설의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토지·부지,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 또는 국비50%, 지방비5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시설당 국비기준 최대 10억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사후관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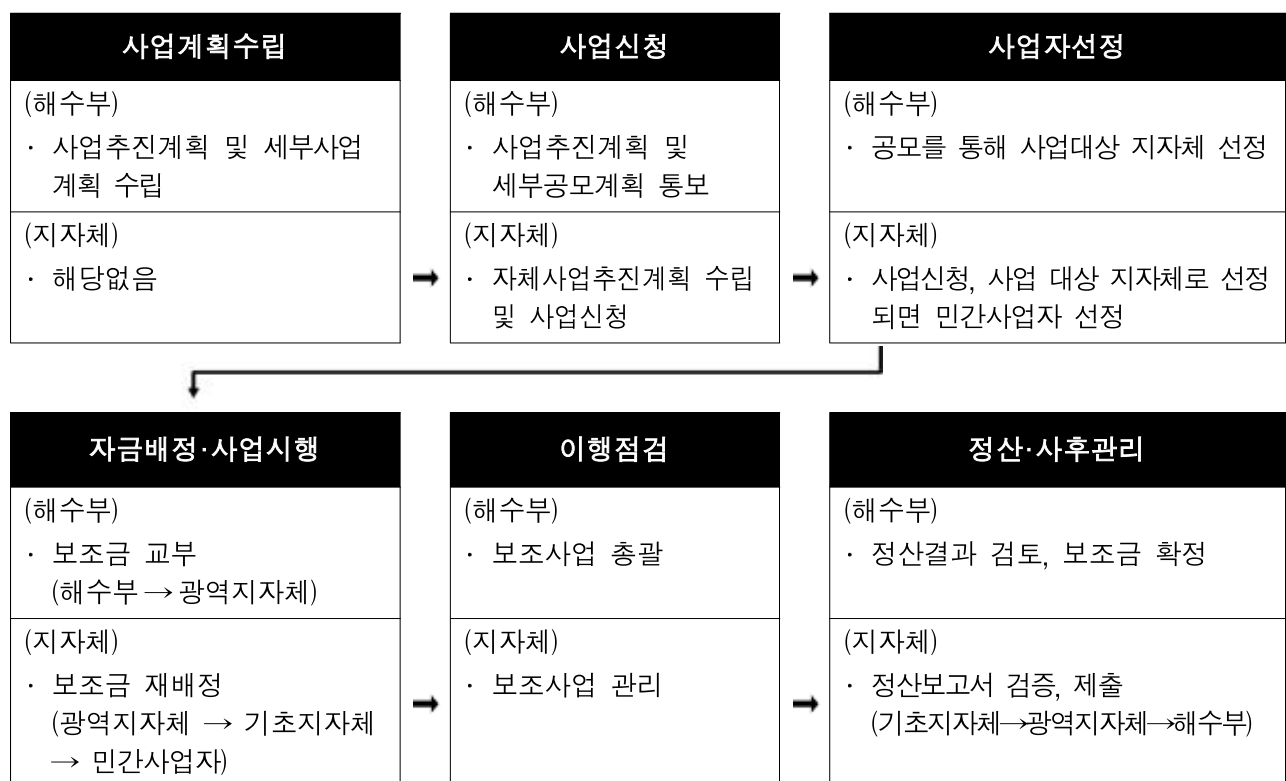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변동현황 공시 기간	처분제한기간	
- 부동산과 그 종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취득일로부터 10년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취득일로부터 10년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취득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그 밖의 기계,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과 그 중물'에 해당하는 처분제한기간을 적용함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의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전년도에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 시행지침 개정(필요시) 통보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전년도에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II. 1. 사업대상자, 2. 사업선정 제외 대상,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 사업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필수사항】

- ①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
 - 「II.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 공모 신청 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협의체가 다수인 경우 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자변경을 감안하여 예비사업자를 포함하여 순위를 작성할 수 있음

【우선순위 결정】

- ① 다수의 시·군·구가 신청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 결정
- ② 민간 협의체가 다수인 경우 시·군·구에서 우선순위 결정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시·도(시·군·구)

- 민간사업 계획으로 선정된 시·도는 시행지침 및 공고된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후 시행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수부에서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전에 시·군·구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선정결과에 따라 시·군·구 예비사업자 우선순위대로 사업 즉시 착수가능
- 시도(사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바탕으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5.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라야함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 및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자,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필요시 해수부 승인)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변경사업자가 공모평가 시 우선순위 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사업계획 변경 원칙>

☐ 변경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 원칙: 시·군·구는 당초 제출하였던 사업계획 내 사업비 배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원칙,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여 이행하는 경우만 가능

- ① 국고보조금 변경 없이 동일 시·도에서 사업자 변경하는 경우(변경사업자가 공모평가 시 우선순위 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 해양수산부 보고
- ② 사업자 변경사항(①해당하는 경우 제외): 시·도지사 사전 검토, 해양수산부 승인
- ③ 개소당 총 사업비의 10% 이상 사업비 배분변경 : 시·도지사 사전 검토, 해양수산부 승인
- ④ 개소당 총 사업비의 10% 미만 사업비 배분변경 : 시·도지사 승인, 해양수산부 보고

* 사업계획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사업계획 변경사항(상세), 공동체 의견수렴 결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구체적 사업비 집행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기타 타 법령에 따라 사업비 변경 시 필요사항 이행 여부

☐ 변경 절차:

- ① 지자체에서는 시·도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 민간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서식7)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
-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 제재 》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비 정산 》

공통사항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8), 정산서(서식9),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요청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 *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행정지시(통보)에 따르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국토계획법, 건설법령, 환경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구 분	☐ 지방자치단체(직접 시범양식 운영) ☐ 민간사업자 보조사업				
자치단체명 (신청기관명)			담당부서		
대표자명			담 당 자 연 락 처	() -	
주 소					
사 업 명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 개체굴 생산지원)				
희망사업물량 (개, m ² , ha 등)					
참여 희망어가 현황 (희망사업비는 총사업비로 작성)	생산자단체 or 협의체명	대표자	참여어가수	면허면적(ha)	희망사업비(천원)
총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이력서 포함) 1부 2.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참여 희망어가 명단 1부(지자체는 시범양식 참여 어업인 명단) * 어업권 현황(면허번호, 유효기간) 필수 포함(별지제3호)					

(주) 1) 위 신청서의 서식이 신청자 모집에 부적합한 경우는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

[illegible]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보 조 사 업 반 납 서 약 서

저(성명, 업체명)는 20△△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친환경양식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보조사업자	(서명 /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 ○ ○ (보조사업자)

1. ○ ○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 국고보조 비율 : ○○%

○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 사업	A+ 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절차 및 양식 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반기에 1회)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생산시설지원 추진상황보고(/4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내역 사업명	연 계 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행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내역사업:

시·도(군·구)명: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상세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 사 업 자: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사업규모:
- 주요 사업내용

추진현황

- yyyy. mm. dd. :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향후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연간 기대 생산량: 미/패/톤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사업 완료사진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금 정산서

1.내역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2.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3.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사업자:

5.사업연도:

6.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확정신청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전 체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8. 집행 상세(e-나라도움 상 보조사업 상세 집행내역(증빙포함)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단위: 원)

연번	집행일자	집행비목	거래처명	집행용도	집행금액 (총사업비 기준)	비고
20 년 소계						
20 년 소계						
합 계						

9. 국비 이자산정

(단위: 원, %, 일)

연번	일자	입금액	지출액	잔액	약정금리	보유일자	이자산정액	비고
20 년 소계								
20 년 소계								
합 계								

⑤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강미숙 사무관 장석준 주무관 라은교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I.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에 따라 불안정한 참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를 구축하여 굴비 산업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20	2021	2022	2023		
사업별 공정단계	실시설계	-	-	-	기본계획	'25.1	사업추진 보고서 (지자체 문서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000	9,000	-	-
- 국 비	1,800	2,700	-	-
- 지방비	1,800	2,700	-	-
- 자부담	2,400	3,600	-	-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은 확정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공모계획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민간)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계획 등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간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인정할 만한 사유로 구성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세부사항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공모계획에 따름
- 보조사업자: 광역지자체장 또는 기초지자체장
- 민간사업자: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종자·사료·기자재 및 유통·가공·수출기업, 연구기업 등으로 구성된 법인 등(해당 사업예정자 포함)
- * 법인 설립 근거 개별법령에 따라 수산양식,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사업자 선정 취소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공모 당시 접수한 예비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목표달성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 선정결과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후보 지자체(2순위)를 사업대상 지자체로 결정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비(개소당 총사업비 160억원 이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양식 요소기술(모니터링 장비, 데이터처리 시스템, 자동화 설비)들을 접목한 참조기 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조성 사업비(기본 계획 수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비용 등)
 - * 전체 사업비 중 참조기 양식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60% 이상이어야 함(단, 자부담 추가 투입 시 해당 비용 제외)
- 수익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연구개발, 인력양성, 선도모델 확산장소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양식생산 시 발생하는 각종 사육데이터는 공개하여야 한다.

- (집행제한)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시설당 국비기준 최대 48억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 구분	변동현황 공시 기간
부동산과 그 종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 사후관리 기간

구분		내용연수 (준공일로부터)	처분제한기준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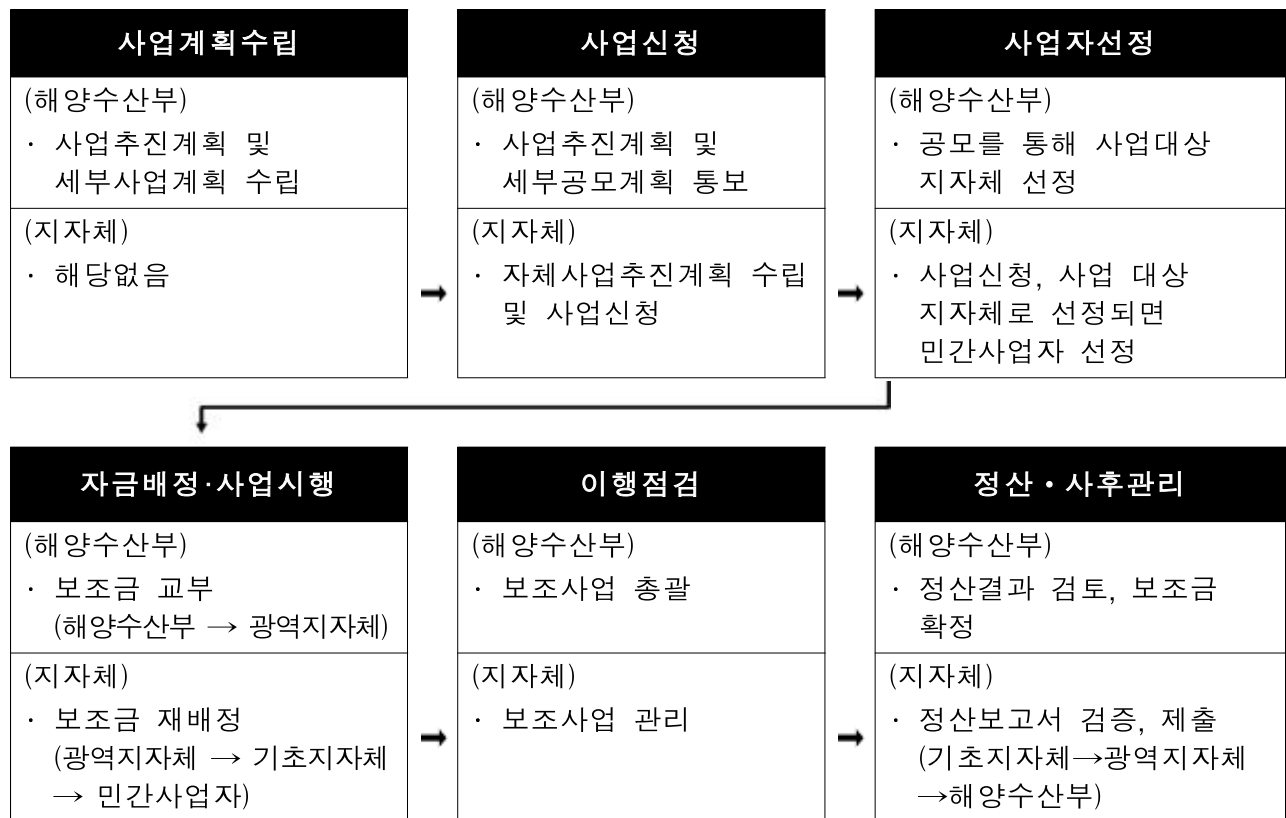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기타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7. 고가동산 중 '그 외 기계류 등'에 해당하는 내용 연수를 적용함
-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은 '23년 선정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의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 시행지침 개정(필요시) 통보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시·도(시·군·구)

- 지자체 주관으로 참조기양식 산업화 모델을 기획하고, 시행지침 및 공고된 공모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사전 기획연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자체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최적 대상부지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단 논의를 거쳐 예비계획서 등 공고된 제반 서류를 작성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시·도(시·군·구)

- 민간사업 계획으로 선정된 시·도는 시행지침 및 공고된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후(별도로 정하는 경우 예외) 시행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자원조달계획,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
 -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전에 시·군·구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선정결과에 따라 시·군·구 예비사업자 우선순위대로 사업 즉시 착수가능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바탕으로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5.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사업 착수 전 위탁사업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라야함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해양수산부

- 공모 선정 사업계획 또는 승인 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경미한 사항 제외)을 받고 사업 추진하여야 함
- 사업관련 계약 등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서식1)
-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 제재 》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비 정산 》

공통사항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2), 정산서(서식3),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요청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 *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행정지시(통보)에 따르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국토계획법, 건설법령, 환경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서식1】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추진현황 및 계획(4분기)

□ 기본 현황(기존 자료 인용)

항 목	내 용
부지위치	
부지면적	
사업비 현황	

□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핵심사항 위주 1페이지)

○ 추진현황

-
- *
-
-
-

○ 향후계획

-
- *
-
-
-

□ '24년 국비 실집행 현황 및 계획 (분기말 재정시스템 기준)

○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해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		*실집행 세부 계획
				완료	계획*	
2023	-	-	-	-	-	○
2024	-	-	-	-	-	
2025	-	-	-	-	-	

□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건의사항,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 등 포함)

-
-
- *
-
-
- *

○○○○○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추진 일정표

※ 핵심사항 위주로 해당사업 특성에 맞게 표를 가감하여 작성

[illegible]

【서식2】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실적보고서

1. 사업명:
2. 시·도(군·구)명:
3.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 사업연도:
5. 사업내용
 - 사 업 자: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사업규모:
 - 주요 사업내용
6. 추진현황
 - yyyy. mm. dd. :
7.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8. 향후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연간 기대 생산량: 미/패/톤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9. 사업 완료사진

【서식3】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보조금 정산서

- 1.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 2.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 3.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 4.사업자:
- 5.사업연도:
- 6.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확정신청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전 체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8. 집행 상세(e-나라도움 상 보조사업 상세 집행내역(증빙포함)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단위: 원)

연번	집행일자	집행비목	거래처명	집행용도	집행금액 (총사업비 기준)	비고
20 년 소계						
20 년 소계						
합 계						

9. 국비 이자산정

(단위: 원, %, 일)

연번	일자	입금액	지출액	잔액	약정금리	보유일자	이자산정액	비고
20 년 소계								
20 년 소계								
합 계								

⑥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구축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장 강미숙 사무관 장석준 주무관 라은교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I. 사업개요

1. 목 적

- 양식시설의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양식 생산성 제고 및 최적 사육조건 도출을 위해 빅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2.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20	2021	2022	2023		
사업별 공정단계	실시설계	-	-	-	기본계획	'25.1	사업추진 보고서 (지자체 문서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857	13,429	0	0
- 국 비	2,000	9,400	-	-
- 지방비	857	4,029	-	-
- 자부담	-	-	-	-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은 확정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공모계획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지자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세부사항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공모계획에 따름
- 보조사업자: 광역지자체장 또는 기초지자체장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 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금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사업자 선정 취소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공모 당시 접수한 예비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목표달성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 선정결과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후보 지자체(2순위)를 사업대상 지자체로 결정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비(개소당 총사업비 170억원 이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스마트 양식 요소기술(모니터링 장비, 데이터처리 시스템, 자동화 설비)들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시설(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포함)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비(기본설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비용 등)
- (집행제한)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비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시설당 국비기준 최대 119억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비를 추가 투입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 구분	변동현황 공시 기간
부동산과 그 증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증물의 경우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 사후관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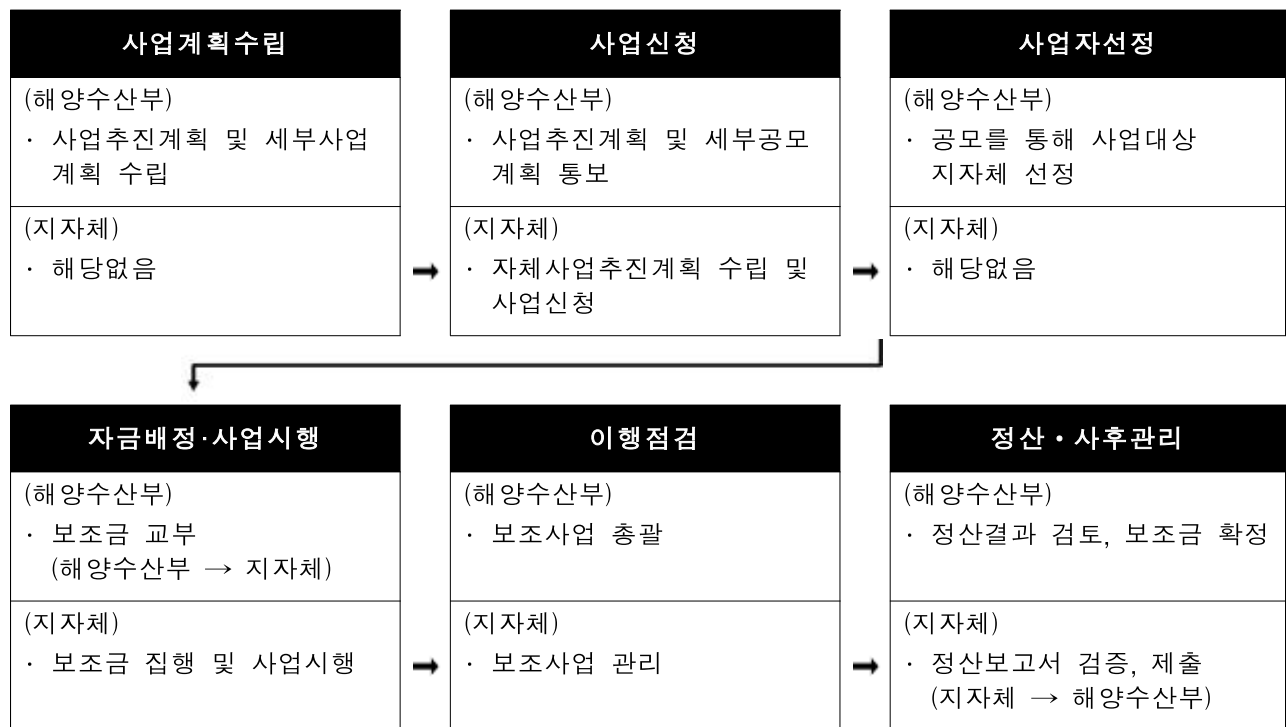
구분		내용연수 (준공일로부터)	처분제한기준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4.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5. 양도, 교환, 대여 6. 담보의 제공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기타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7. 고가동산 중 '그 외 기계류 등'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함
-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은 '23년 선정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의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 시행지침 개정(필요시) 통보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시·도(시·군·구)

- 지자체 주관으로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구축 모델을 기획하고, 시행지침 및 공고된 공모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사전 기획연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자체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최적 대상부지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단 논의를 거쳐 예비계획서 등 공고된 제반 서류를 작성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5.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해양수산부

- 공모 선정 사업계획 또는 승인 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경미한 사항 제외)을 받고 사업 추진하여야 함
- 사업관련 계약 등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에 승인절차 이행

《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서식1)
-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제재 》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비 정산 》

공통사항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2), 정산서(서식3),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요청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행정지시(통보)에 따르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국토계획법, 건설법령, 환경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서식1】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추진현황 및 계획(4분기)

□ 기본 현황(기존 자료 인용)

항 목	내 용
부지위치	
부지면적	
사업비 현황	

□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핵심사항 위주 1페이지)

○ 추진현황

-
- *
-
-
-

○ 향후계획

-
- *
-
-
-

□ '24년 국비 실집행 현황 및 계획 (분기말 재정시스템 기준)

○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건립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해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		*실집행 세부 계획
				완료	계획*	
2023	-	-	-	-	-	○
2024	-	-	-	-	-	
2025	-	-	-	-	-	

□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건의사항,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 등 포함)

-
-
- *
-
-
- *

참고

○○○○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추진 일정표

※ 핵심사항 위주로 해당사업 특성에 맞게 표를 가감하여 작성

[illegible]

【서식2】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실적보고서

1. 사업명:
2. 시·도(군·구)명:
3.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 사업연도:
5. 사업내용
 - 사 업 자: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사업규모:
 - 주요 사업내용
6. 추진현황
 - yyyy. mm. dd. :
7.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8. 향후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연간 기대 생산량: 미/패/톤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 ## 9. 사업 완료사진

【서식3】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보조금 정산서

1.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2.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3.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4.사업자:

5.사업연도:

6.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확정신청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전 체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⑧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강미숙 사무관 장석준 주무관 라은교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I. 사업개요

1. 목 적

- 고부가가치 스틸헤드, 연어류 산업화 기반 조성을 통한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연어류의 국내 생산 기반 마련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4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20	2021	2022	2023		
사업별 공정단계	기본계획	-	-	-	-	'25.1	사업추진 보고서 (지자체 문서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086	3,044	15,640	
- 국 비	326	913	4,692	
- 지방비	326	913	4,692	
- 자부담	434	1,218	6,256	

*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은 확정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민간)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계획 등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간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인정할 만한 사유로 구성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세부사항은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름
- 보조사업자: 광역지자체장 또는 기초지자체장
- 민간사업자: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종자·사료·기자재 및 유통·가공·수출기업, 연구기업 등으로 구성된 법인 등(해당 사업예정자 포함)
- * 법인 설립 근거 개별법령에 따라 수산양식,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조

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u>반대급부</u>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② 사업자 선정 취소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공모 당시 접수한 예비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목표달성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 선정결과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후보 지자체(2순위)를 사업대상 지자체로 결정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센터 조성 사업비(개소당 총사업비 197.7억원 이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양식 요소기술(모니터링 장비, 데이터처리 시스템, 자동화 설비)들을 접목한 연어류·스틸헤드 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조성 사업비(기본계획 수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비용 등)
 - * 전체 사업비 중 연어류·스틸헤드 양식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60% 이상이어야 함(단, 자부담 추가 투입 시 해당 비용 제외)
- 수익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연구개발, 인력양성, 선도모델 확산장소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양식생산 시 발생하는 각종 사육데이터는 공개하여야 한다.

- (집행제한)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시설당 국비기준 최대 59.31억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 구분	변동현황 공시 기간
부동산과 그 종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 사후관리 기간

구분		내용연수 (준공일로부터)	처분제한기준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7.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8. 양도, 교환, 대여 9. 담보의 제공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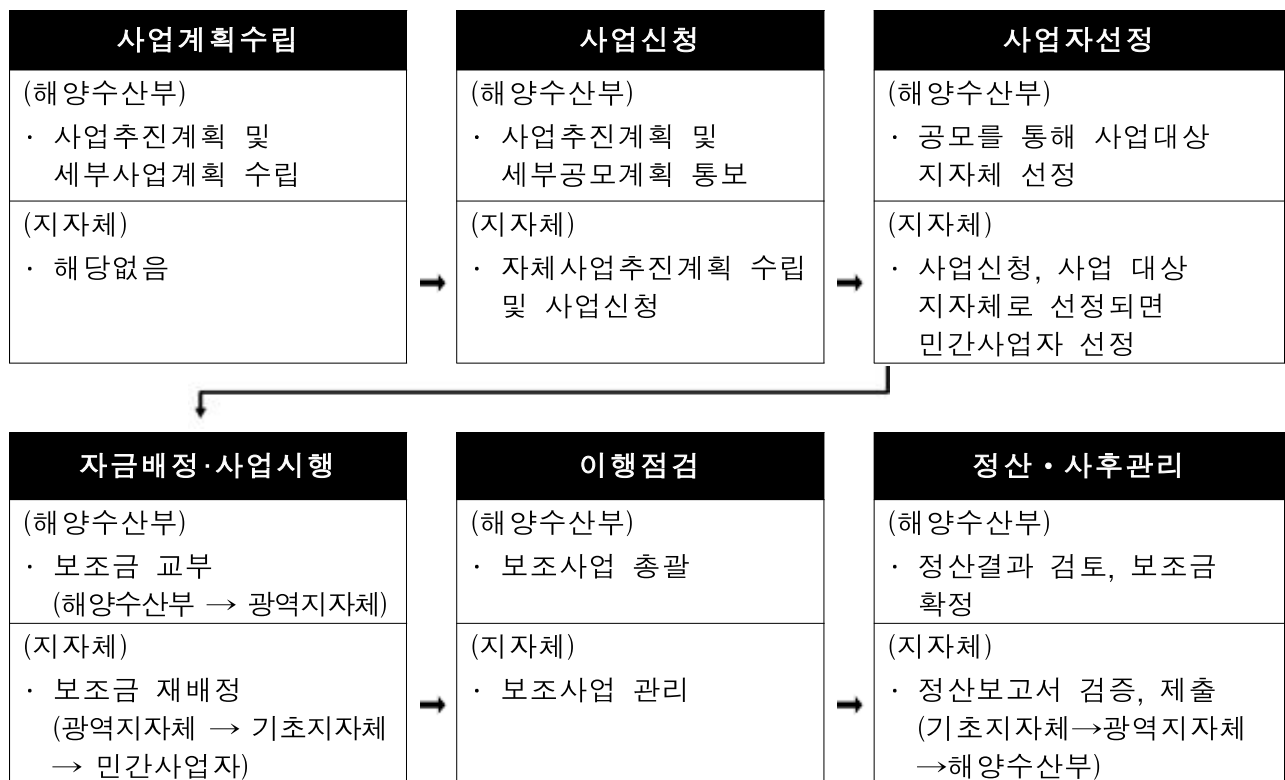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청 내용연수에 없는 '기타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7. 고가동산 중 '그 외 기계류 등'에 해당하는 내용 연수를 적용함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의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 시행지침 개정(필요시) 통보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시·도(시·군·구)

- 지자체 주관으로 연어류및스틸헤드양식 산업화 모델을 기획하고, 시행지침 및 공고된 공모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사전 기획연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자체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최적 대상부지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단 논의를 거쳐 예비계획서 등 공고된 제반 서류를 작성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시·도(시·군·구)

- 민간사업 계획으로 선정된 시·도는 시행지침 및 공고된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후(별도로 정하는 경우 예외) 시행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
 -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전에 시·군·구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선정결과에 따라 시·군·구 예비사업자 우선순위대로 사업 즉시 착수가능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바탕으로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5.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사업 착수 전 위탁사업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따라야함
 -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6.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 》

해양수산부

- 공모 선정 사업계획 또는 승인 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경미한 사항 제외)을 받고 사업 추진하여야 함
- 사업관련 계약 등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월 집행마감결과의 일치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자료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서식1)
-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 제재 》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름
 -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름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름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름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 사업 포기 시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발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받아야 함
 - 사업포기서(사유포함) 및 사업 책임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시·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포기 승인 요청. 단, 부정수급 등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 포기 승인 시 해당 사업비에 대한 반납 및 정산절차를 조속히 이행

《 사업비 정산 》

공통사항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2), 정산서(서식3),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요청시),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현황, 검증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해당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부기등기 증빙자료, 검증보고서(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회계감사 보고서(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민간사업자에 한함)
- *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

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행정지시(통보)에 따르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국토계획법, 건설법령, 환경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서식1】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4분기)

□ 기본 현황(기존 자료 인용)

항 목	내 용
부지위치	
부지면적	
사업비 현황	

□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핵심사항 위주 1페이지)

○ 추진현황

-
- *
-
-
-

○ 향후계획

-
- *
-
-
-

□ '24년 국비 실집행 현황 및 계획 (분기말 재정시스템 기준)

○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센터 조성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해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		*실집행 세부 계획
				완료	계획*	
2023	-	-	-	-	-	○
2024	-	-	-	-	-	
2025	-	-	-	-	-	

□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 (건의사항,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 등 포함)

-
-
- *
-
-
- *

참고

○○○○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센터 추진 일정표

※ 핵심사항 위주로 해당사업 특성에 맞게 표를 가감하여 작성

[illegible]

【서식2】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센터 실적보고서

10. 사업명:

11. 시·도(군·구)명:

12. 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13. 사업연도:

14. 사업내용

- 사 업 자:
- 사업위치:
- 사 업 비:
- 사업규모:
- 주요 사업내용

15. 추진현황

- yyyy. mm. dd. :

16.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17. 향후 활용계획 또는 기대효과

- 연간 기대 생산량: 미/패/톤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18. 사업 완료사진

【서식3】

연어류및스틸헤드등양식산업화센터 보조금 정산서

- 1.사업명:
- 상세사업명(필요 시 기재):
- 2.작성자: 시·도 과 (직급) (이름)
- 3.확인자: 시·도 과 (직급) (이름)
- 4.사업자:
- 5.사업연도:
- 6.정산내역(총사업비 기준)

(단위: 원)

세 부 사업명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확정신청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7.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반납액		비고
						집행잔액	이자액	
전 체	합 계			-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